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조윤리협회의 자료 제출 범위 확대 등〉

■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81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법조윤리협회의 자료 제출 범위 확대 등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지원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4. 9. 19.
3. 회부연월일 : 2024. 9.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두고,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변호사 외 퇴직공직자 등의 수임자료와 활동내역 등을 제출받아 법조계 전관예우를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법조윤리협회의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그 보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료제출의무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관련 의무로 명기되어 있는 관계로, 국정감사에서의 자료제출요구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에 규정된 국회보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외에도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법조윤리협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 보관기간을 규율함으로써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9조의9 및 제89조의11).

Ⅲ. 검토의견

1. 법조윤리협회의 자료 제출 범위 확대 등

현행	개정안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회는 매년 제89조제1 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u>한</u> <u>다</u> .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 ----- ----- <u>하며,</u> <u>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 .
② 윤리협회는 제89조의8에 도 불구하고 「 <u>인사청문회법</u> 」 에 따른 <u>인사청문회</u> 또는 「국 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u>국정조사를 위하여</u> 국 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u>제</u> <u>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u> <u>항에 따라</u>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u>인사청문회,</u> ----- ----- <u>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위하</u> <u>여</u> ----- <u>제</u> <u>89조의4제3항, 제89조의5제2항</u> <u>및 제89조의6제4항</u> ----- ----- ----- -----.
1. 2. (생략) <u><신설></u>	1. 2. (현행과 같음) 3. <u>제89조의6제4항에 따라 제출</u> <u>받은 자료: 퇴직공직자의 성</u>

현행	개정안
<신설>	명, 취업일, 업무활동내역(고문 또는 자문 내역을 포함한다)이 기재된 최근 3년간의 업무내역서 제89조의11(자료의 보관)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부터 제89조의6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①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함에 있어 대통령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안 제89조의9제1항), ② 윤리협의회는 비밀누설금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서 현행 인사청문회 및 국정조사 외에 ‘국정감사’를 추가하고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도 제출 대상으로 추가하며(안 제89조의9제2항), ③ 윤리협의회로 하여금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그 목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안 제89조의11).
- 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그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 기구로,¹⁾

법관, 검사, 군법무관 등으로 재직하고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이하 ‘공직퇴임변호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이하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대상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등(이하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변호사 아닌 사람(이하 ‘퇴직공직자’)의 성명 및 업무내역서 등을 제출받고 있음.

현행 제89조의9에 따르면,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²⁾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윤리협의회가 법조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이른바 전관 예우와 수임규정에 위반한 수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므로 그 운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임.

1)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9조의2(윤리협의회 구성)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2) 제89조(윤리협의회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 현행법상 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함에 있어 어떤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양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윤리협의회는 새롭게 제정한 규범,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 변호사의 숫자, 징계개시나 수사의뢰한 건수나 행위유형 등과 같은 일반적이며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할 뿐, 특정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 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지는 않음.³⁾

수임자료의 경우에는 현행 제89조의9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게 되는데⁴⁾, 개정안은 여기에 ‘국정감사’를 추가하고,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 공직자 활동내역 등도 제출 대상으로 추가하여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법상 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로서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고, 법무법인등에 취업하였던 퇴직공직자가 공직후보자가 되어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되는 현실과, 변호사가 아닌 전직 고위공직자가 ‘고문’이나 ‘전문위원’등의 직책으로 법무법인등에 취업하여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에 따라 비(非)

3) 정형근, 2022, 변호사법 주석, p.910.

4) 현행 제89조의9제2항은 윤리협의회가 비밀누설금지 규정 때문에 자료제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자료의 제출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시에는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배제시켰음.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회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조 직역에 있어서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윤리협의회로 하여금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공직 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를 위하여 찬성하는 견해와, 변호사들의 영업비밀 노출 및 의뢰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① 「변호사법」상 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매년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에 대하여 활동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윤리협의회의 설립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점, ②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가 윤리협의회에 요구하는 자료는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특정변호사의 성명, 수임일자, 취임일, 사건명, 업무활동내역 등 대부분 전산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 ③ 현행 제89조의9제2항에 따라 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인사청문회법」,⁵⁾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⁶⁾ 등의 관련 법률에서도

제출되는 자료의 범위나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어 의뢰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고,

반대의견으로는, ① 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수임자료는 비록 범위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다른 자료나 정보와 조합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 ② 현행법 제89조의8은 윤리협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는 제89조의8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까지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 ③ 현행법 제89조의9를 신설할 당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원안은 본래 윤리협회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의뢰인의 사생활 침해 및 수사·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같은 형태로 제한하여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자료제출의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5)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들고 있음.

따라서 윤리협회의 자료제출의무 강화는 위와 같은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전관예우 관행의 근절과 사법신뢰도 강화라는 목적과 변호사 및 의뢰인의 영업비밀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충분한 이익형량을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다음, 현행 제89조의67)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8)에 따른

7)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 · 부총장 · 대학원장 ·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장 · 부기관장 ·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 부총재 ·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 · 부원장 ·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재산등록의무자 및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경우, 그 법무법인 등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 및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에 대한 제출대상이 아니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법무법인등에 취업하는 경우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⁹⁾ 이 경우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¹⁰⁾

이는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및 관련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변호사법」상의 업무활동내역 제출의무와 입법취지 및 체계가 유사한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퇴직 후 2년간 제출하도록 하는 반면 「변호사법」상 업무활동내역 제출의무는 기간의 정함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른 의무가 비교적 강화되어 있는 형태임.

개정안과 같이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작성 의무가 면제되고 이미 작성된 업무내역서도 비공개되는 것과 비교할 때, 국정감사 등에 있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현행 제89조의4제1항11)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1)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¹²⁾은 ‘퇴직공직자’로 하여금 ‘최근 3년’간의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상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과,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수임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제출하는 반면¹³⁾, 개정안에 따른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는 고문·자문 내용을 포함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법 적용에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마지막으로, 윤리협의회로 하여금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12)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89조의9제2항제3호

3. 제89조의6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퇴직공직자의 성명, 취업일, 업무활동내역(고문 또는 자문 내역을 포함한다)이 기재된 최근 3년간의 업무내역서

13)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안 제89조의11에 대해서는 윤리협회의 보유·관리상의 행정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제한을 둘 필요성은 인정되나,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자료가 없게 되어 인사청문회 등에서 자료 요청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아울러 퇴직공직자의 경우 ‘최근 3년’에 한하여만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자료보관기관 경과 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윤리협회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안 제89조의9제2항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회 등이 국정감사를 위하여 보고, 서류 등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변호사법」에 별도로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을 둘 실익이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¹⁴⁾

문 의 처
02) 6788-5060

14) 대한변호사협회 의견회신(2024. 11.)